

지난해 알다시피, 입법부는 매사추세츠주 직원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주는 유급 가족의료병가법(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FML)을 제정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모든 고용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직원들은 미연방도 새로운 가족의료휴가부(Department of Family and Medical Leave: DFML)가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법은 영유아교육 보육서비스부(Early Education and Care: EEC)가 보조금을 받는 아이들의 복지를 관리하는 가정보육 제공자의 고용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법에서 가정보육 제공자들은 제한된 목적으로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부(EEC)의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M.G.L 15D § 17 (b) 및 (c)을 참조하십시오.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부(EEC)는 처음에 전적으로 노사관계와 급여공제만을 목적으로 한 고용주였습니다. 이 내용은 유급질병휴가(Earned Sick Time) 법안과 현행의 유급 가족의료휴가(Paid Family Medical Leave: PFML) 법안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법안은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부(EEC)를 그러한 목적으로 고용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부(EEC)와 가정보육 제공자 간의 해당 고용주-고용인 관계는 가정보육 제공자와 보육지원시설 리소스 및 추천기관(CCRRs) 또는 가정보육시스템(FCCS) 간의 고용주-고용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다른 목적에도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주들이 모든 고용인들에게 직접 해당법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직원이 고지 내용을 알고 이를 승인(또는 거부)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부(EEC)는 가정보육 제공자에게 해당 법률의 변경사항을 고지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부는 곧 변경될 법안 내용을 귀하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고지를 재전송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질문 및 승인 양식을 통해 다음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eecpfml@mass.gov.**

이 고지의 내용은 13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다음 링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ass.gov/lists/paid-family-and-medical-leave-downloads-for-massachusetts-employers>.